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김 양식 영양제 개발·보급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18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의 개발·보급사업 추진 근거 마련 ...	2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의 사용은 해수의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의 개발·보급사업 추진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 및 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김 양식 영양제의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② (생략)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 및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의 개발·보급</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김 생산량이 줄어들고 김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김 양식의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김의 최적성장 조건은 15℃ 내외로, 적정 수온 이상 또는 이하의 환경에서는 성장이 더딘 특성이 있는데, 2024년에는 고수온특보가 71일간(7.24.~10.2.) 지속되어 2023년의 57일에 비해 증가하였고, 고수온으로 인해 김의 채묘작업¹⁾도 당초 예정된 9월 중순 이후에서 10월 초 이후로 지연되어 생산기간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이와 관련, 현재 일부 김 양식업자들이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발생에 대응하고 있는데, 과도한 비료 살포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를 개발·보급해 악화되는 양식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에 필요한 영양제의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상수온 등으로 인한 김양식업계의 피해와 김 영양제의 조속한 개발·보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김 영양제 개발·보급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관련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김 종자를 양식을 위한 김발에 붙이는 작업을 뜻하며, 수온이 22℃ 이하일 때 작업이 가능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관한
현행법의 입법형식을 보면 개별 산업을 열거하기 보다는 김과 김
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조·가
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등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사업 유
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김 영양제 개발·보급사업도 기존 사업유형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고수온 내성이 있는 김종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상수온 대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은
참고할 수 있어 보임.

[현행법 제12조 조문내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3. 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련된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2) 및 그에 따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 기준에

2)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관한 고시」 3)에서 규정한 ‘활성처리제’⁴⁾의 개념에 김 양식에 필요한 영양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김 양식에 필요한 영양제’를 ‘김 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국립수산물과학원(해조류연구소)의 경우 김 양식에 필요한 영양제의 정의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고시 등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로 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김산업연합회의 경우 김 황백화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약제 및 영양제와 기존 활성처리제를 대체하는 효율적인 약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이하 생략)

3)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 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산성전해수"란 유격막 전해수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다.
3.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4. "고염수"란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4) 활성처리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 참조

참고 1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구분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고염수 활성처리제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
정의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하는 물질	유격막 전해수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성분 함유량	가. 유기산: 10% 이상 나. 염소이온, 황산이 온, 질산이온의 합 계 함량은 8% 이 상 9.5% 이하 다. 황산이온, 질산 이온은 각각 2% 이하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형	가. 염소이온: 3.5% 이하	가. 소금: 10% 이상 13% 이하 나. 염소이온 함량은 15% 이상 17% 이 하. 다만, 염화수 소는 8.5% 이상 9.5% 이하일 것 다. 나트륨: 4% 이상 6% 이하 라. 칼슘: 0.1% 이상 0.6% 이하 마. 인: 1.5 이상 4% 이하 바. 차아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	가. 수소이온농도 (pH)가 pH 5.8 이상 pH 8.5 이하일 것
공통	가. 총질소, 총인: 각 5% 이하 나. 비소: 1.5mg/l 이하 다. 카드뮴: 2mg/l 이하 라. 수은: 0.5mg/l 이하 마. 납: 2mg/l 이하 바. 크롬: 2mg/l 이하			
사용 단계	양식기간(10월~다음해5월) 중 황반병, 잡조(파래 및 규조류), 이물질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용			
효능	질병, 잡조(파래 및 규조류), 이물질 제 거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질병, 잡조(파래 및 규조류), 이물질 제 거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영양염 공급을 통한 생장 촉진 및 품질 향상	질병, 잡조(파래 및 규조류), 이물질 제 거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제품 사진				